

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70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년 5월 26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」 개정으로 공립 박물관·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사무가 시·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의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사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공립 박물관·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.(안 제3조의3)
- 나.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공립 박물관·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.(안 제6조제3항제3호)
- 다. 문구 정비 등 기타 경미한 사항 수정함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
- 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- (1) 창의규제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원안동의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평가제외 대상
- (5) 규제개선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
검토의견: 해당없음

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(2026. 4. 9. ~ 4. 29.) 결과: 의견없음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 : 문화본부 박물관과 류위남 (☎2133-4236)

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제2항제4호 중 “그밖”을 “그 밖”으로 한다.

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3(공립 박물관·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) ①

시장은 법 제12조의3에 따른 공립 박물관·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를 반기별로 실시한다.

② 시장은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」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·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신청을 상반기는 2월 말일까지, 하반기는 8월 말일까지 접수한다.

③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는 서면심사, 현장실사 및 종합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.

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시행규칙”을 각각 “같은 조례 시행규칙”으로

한다.

제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법 제12조의3에 따른 공립 박물관·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의2(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수립·시행) ① (생 략)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. 1. ~ 3. (생 략) 4. <u>그밖</u> 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 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<u><신 설></u>	제3조의2(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수립·시행) ① (현행 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그 밖</u> ----- ----- <u>제3조의3(공립 박물관·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 가)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3에 따른 공립 박물관·미술관의 설 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를 반기별로 실시한다.</u> <u>② 시장은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」 제7조의5제1 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·미술관 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신청을 상반기는 2월 말일까지, 하반기 는 8월 말일까지 접수한다.</u> <u>③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는 서 면심사, 현장실사 및 종합심사 의 방법으로 실시한다.</u>

제5조(지원경비의 관리) ①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은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박물관 및 미술관 등에 대하여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시행규칙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6조(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·

② (생략)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·2. (생략)

<신설>

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제5조(지원경비의 관리) ① -----

같은 조례 시행규칙-----
-----.

② -----

----- 같은
은 조례 시행규칙-----
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6조(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·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법 제12조의3에 따른 공립 박

3. · 4. (생략) ④ (생략)	<u>물관·미술관의 설립타당성</u> <u>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에 관한</u> <u>사항</u> 4. · 5.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의3(공립 박물관·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) 신설하여 시장이 반기별로 설립타당성을 검토·평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평가위원회 운영비, 현장실사 여비 등의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- ☐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 - 상위법령인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에 따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공립 박물관·미술관 설립 타당성 평가 절차를 서울특별시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선언적 규정임
 - 접수되는 신청 건수(반기별에 따라 평가 비용은 유동적으로 변동되므로 현시점에서 향후 5년간 발생할 구체적인 비용을 기술적으로 예측하고 추계하는 것은 어려움
 - 또한 평가 절차(서면심사, 현장실사, 종합심사)에 소요되는 위원회 수당 및 여비 등의 비용은 기존 위원회 운영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

4. 작성자

-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박물관과 류위남(☎2133-4236)